

# 우리나라 경호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박 주 현\*

## ◇ 목 차 ◇

- 
- I. 서언
  - II. 민간신변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 III.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방안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 I. 서 언

우리 나라는 최근 경제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범죄의 흉폭화, 지능화, 전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테러는 60년대 이후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하여 현대에 있어서 암살과 테러의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지도자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들이 항상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가되고 국민생활치안에 대한 각종 사회 불안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기관인 안보기관, 치

---

\*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안기관 및 특수 기관 등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흥폭한 테러와 고도화된 계획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자기 스스로 신변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 용인대학교, 한서대학교등에 안전관리학과(신변보호), 경호학과가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민간 경호기관까지 운영되고 있는 추세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미 겪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간차원의 범죄 예방 제도중의 하나인 민간신변보호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하나의 새로운 사업 군으로 정착을 하였다. 민간차원에 의한 선진 외국의 새로운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 민간신변보호업<sup>1)</sup>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용역경비업개정(1995년 12월 30일)으로 민간신변보호업이 용역경비업에 포함되면서 일반적으로 민생치안이라는 부분이 국민들이나 경찰까지도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주로 경찰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기능으로만 인식하였던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사회질서유지 및 안녕에 대하여 공공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용역경비업에 의한 신변보호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민간신변보호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민간신변보호요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II. 민간신변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 나라 민간신변보호는 국가 통치권에 의해서만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경호수요에 따라 생겨났다. 민간신변보호는 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러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

1) 사설경호업, 민간경호업으로 불려지던 것을 여기서는 용역경비업법상 민간 신변보호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김두현, 경호경비법, 와이제이, 1996, 68~69, 174면).

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이론에 그 기초를 둔 것이다. 1985년 사설경호부터 1996년 7월1일에까지 민간신변보호 경영자와 민간신변보호요원들의 절적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제도 자체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1976년 12월 13일 한국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의한 용역경비가 실시 되는 가운데 민간신변보호는 시설경비 및 호송경비와는 별개의 문제이었던 것이다.

산업사회에 있어 경찰작용에 의한 경찰수요의 급증에 따라 행정기관이 경찰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각 계층의 경호수요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신변보호업에 의한 신변보호 활동이 상당 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현대 산업社会의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신변보호 조직과 작용에 대한 법적제제를 상업적 성격의 일반 사업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업체 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이나 우범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조직 결정 동기부여와 함께 폭력조직을 양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 1. 새로이 개정된 법에 의한 허가업체 저조

1996년 7월 1일 용역경비업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의 상황을 살펴 볼 때, 민간신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오래 전부터 민간신변보호업을 운영해 오던 많은 업체들은 1996년 7월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등록업체는 한국경호경비시스템, 충용, 동양, 가드원, 탐경 등의 5개업체<sup>2)</sup>뿐이다. 대부분 개인자격으로 운영을 해 용역경비업법에 의하여 법인등록은 물론, 경비지도사 채용,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등록, 관할 경찰청장의 허가, 경비지도사의 채용 등, 행정적인 절차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용역경비업법에 준해서 민간신변보호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서울 20여개, 부산10여개, 대구5개 등 그 외 지역별 소수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자체 연수원을 갖추고,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신변보호업무를 부여하는 체계적인 업체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된 법에 대한 사전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또, 법인전환 및 여러 가지 요건들을 미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업체가 5개에 그친 것이다.

2)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자료제공(1996년 8월 20일 현재).

## 2. 경찰의 신변보호업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민간신변보호업이 본연의 업무인 신변보호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협박, 공갈 및 폭력을 행사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가 있어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민간신변보호업의 이미지가 조직폭력배, 해결사 등으로 인식되어져 민간신변보호업의 전체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신변보호업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이 민간신변보호 업무의 적절한 실시를 위하여 민간신변보호업체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경비업자와 경비요원의 배치장소를 주시하면서 근무 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청 방범과와 관할 경찰서 방범과에서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의 인력 부족 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실제로는 민간신변보호업체 및 경비업체의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 3. 민간신변보호요원 교육의 질 저하

용역경비업법상의 민간신변보호업체들 간의 부분적인 갈등도 민간신변보호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정된 법에 의한 신변보호업체가 5개에 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 들간의 마찰이 일정기간동안 지속될 것이고, 또, 개정된 법에 의해서 등록한 신규업체와 기존 시설 경비업체가 신변보호업무의 요건을 갖추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경비업체가 신변보호업무를 위한 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소규모의 신규 신변보호업체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 경비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한정된 신변보호 시장 속에서 업체 들간의 덤핑행위도 문제가 되겠지만 신변보호업의 전문성을 고려 할 때, 시설경비에 종사하던 경비원이 신변보호업무로 갑작스레 전환하는 것은 신변보호요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제공과 함께, 국민들의 신변보호업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초창기에 있는 신변보호업이 공익을 위한 새로운 사업 군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단결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III.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방안

민간신변보호업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찰과의 협력도모를 통하여, 사회질서에 이바지한다는 사회적 공익성을 인식함으로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예방이라는 기본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민간신변보호업의 효율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은 묘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는 등록업체가 불과 5개 업체 정도이며, 그 규모가 크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신변보호 업무만을 운영하고자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민간신변보호업 발전은 미국, 일본과 다른 방향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은 민간신변보호업 전체의 참여에 의한 제도의 지속적인 연구와 1996년 6월 20일 기계경비전문업체인 에스원이 동대문 경찰서와 합동으로 발족한 “학교 폭력 근절봉사단”과 같은 사회 봉사 기능이 민간신변보호업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여기에 우리나라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제언도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그치겠다.

#### 1. 제도적 발전방안

우리 나라 민간신변보호와 미국의 민간신변보호의 규모나 활동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등록업체는 5개인 것에 비하여 미국은 50배에 이르는 300여개의 업체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신변보호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세분화되어 민간신변보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신변보호업의 영업허가는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용역경비업법 제4조)

3)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1996년 6월 22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한국체육대학교 자원봉사회가 발족되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취득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 그 허가증의 효력은 지속된다. 허가 후 일정기간 후의 허가증 갱신을 하게끔 하는 미국의 경우 민간신변보호업자로서 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자의 경력 및 학력요건은 고졸이하인 경우 10년의 경력, 전문대 졸업인 경우 8년,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5년,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4년의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의 1/2는 경호분야 책임자로서의 경력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 민간신변보호업의 경우에는 학력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민간신변보호업의 경영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학력의 요건을 두는 것이 민간신변보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역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제3조 1항에 신변보호업무 즉 민간신변보호요원의 자격은 무술 유단자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신변보호업체에서도 무술 4단 이상의 유단자, 집행유예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는 자, 학력, 신체 등의 민간신변보호요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민간신변보호요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너무 미약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민간신변보호요원들의 자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 기관으로부터 민간신변보호요원의 능력, 자질 등을 인정하는 민간신변보호요원 자격증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변보호업무의 수행에 연관된 기초 법률지식, 신변보호요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호신술 및 신변보호 장비 사용의 숙지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대학의 경호 관련학과나 공식기관의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을 말하는 것이다.

## 2. 경비협회의 활성화 방안

다음으로 경비협회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신변보호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민간신변보호업의 시장이 열악하고, 등록된 업체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경비협회에서 독립되어 운영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신변보호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용역경비협회의 범주 속에서 적절히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서 민간신변보호업의 연구 발전, 요원의 교육훈련, 요원의 후생복지, 장비의 개발, 그 이외에도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특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신변보호개념의 재정립,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원 운영 등이 협회의 중요 활동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 3. 민간신변보호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

민간신변보호요원의 자질 문제는 신변보호업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 용역경비법상 민간신변보호요원의 교육제도가 경비원과 구별되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민간신변보호요원의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임 교육은 15시간, 직무교육은 4시간이며 교육의 주관은 용역경비업협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경비원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교육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신변보호요원의 직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시간과 내용에 있어서 시설경비원과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의전, 호신술, 대통령경호실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호경비법과 같은 신변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우수 인력 확보방안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신변보호업에 종사함으로서 국민들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일정부분의 권위가 인정되고, 신변보호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 있는 직업 군으로서 적정 보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용역경비협회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로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신변보호업에 있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육이며 이것은 민간신변보호업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수백 개의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95년에 한국체육대학교에 안전관리학과(신변보호)가 신설되면서 3개 대학, 2개의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학문적 교육기관 또는 민간신변보호요원 양성기관이 많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 5. 민간신변보호 전담을 위한 국가기구의 필요

민간신변보호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서 국가적 차원의 민간신변보호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1996년 7월 1일 이전에는 경찰청 강력계에서 민간신변보호업에 대한 몇 차례의 실태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경찰청 방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신변보호 시장이 점차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민간신변보호의 허가, 감독, 교육, 규제사항들을 관장하는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IV. 결 론

지금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민간신변보호업의 실태와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민간신변보호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민간신변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혁신적인 봉사자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시설경비업자들과 경비협회는 민간신변보호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계기관은 민간신변보호업 경영자나 신변보호요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자격증 제도의 신설 및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넷째, 민간신변보호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찰청내 민간신변보호업 전담기구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신변보호 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인 연구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연구소 설립과 우수한 민간신변보호요원 배출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간신변보호업체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인 지위 향상과 신변보호전문학과에 대한 지원방안등의 민간신변보호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가 추구하는 경호법치주의, 전문화, Total Security 체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변신 될 것이 확실하다.

## 參 考 文 獻

- 警察大辭典, 서울 : 治安本部, 1987.
- 김두현, 警護學概論, 서울 : 쟁기, 1995.
- ———, 警護警備法, 서울 : 와이제이, 1996.
- 郭潤直, 民法總則, 서울 : 博英社, 1986.
- 이운근, 남궁승태, 法學概論, 서울 : 흥연문화사, 1996.
- 이운근, 韓國私警備 發展方案에 關한 調查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1989.
- 社團法人韓國用役警備協會, 年報, 서울, 1995.
- 장명진, 警護實務, 서울 : 金蘭印刷社, 1994.

## ABSTRACT

### THE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SECURITY GUARD WORKS ON OUR COUNTRY

By Park, Ju Hyeon

Our conuntry have come out to the phenomenon to the atrocity crimes, make into a intellecture crims and specialization with them due to various change to the expension of economy growth, drift of population to cities and sense of value is plunged in confution.

Now that things have come to this day, since foundation of the security guard law it first begin, ten years, civilian securities guard law was include to the civil service securities law due to amendment fo the civility secuties law newly on Dec. 30, 1995.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part of the public peace of peoples livelihood were slough of the visual angle in knowledge which function of the civilies security were only be in under the government dimansion were put in order to be tointly according to the such state of affairs, should found the consider a counterplan fundamentally regarding to the what to doing efforts foster the civilities securitylaw and qualatalive elevation of presidential guards.

To make a long story short by few words, the question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ive points.

The first, peoples arrengements for the attitude fo public duty service with devotedly Sustaining publicity work activities for the thire divert of the understanding of civilian security guard.

The secondly, Existing security traders and security association should support to the civilian security works.

The third, The government office concerned should strengthen the licens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xistings in order to may establishment newly systems of license and technical institute of regarding to them.

The fourth, Should be newly organixed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personal protective works in the police bureau for the sustaining development of civirity guard works and soundness of the upbringing.

The fifth, It is necessary to found the reserch institute for the study on oretical, scholarly, study for the technical reserch and enlargement of effeciveness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the Universitys function and duty, activity plan, support plan to the Department of security specialist for the come forward in succession it under the national assistance.

The finally, I am sure that the Korean security association could be transiormed into the organization which reliable and receive a love from the peoples when doing best utmost to do pursuit of the structure to be a securitys legalism, specialization and total security systems.